

보도시점 2024. 1. 16.(화) 배포시점 배포 2024. 1. 16.(화)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등 국민 친화적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연계정보 정의 도입, 연계정보 일괄변환 처리 근거 마련, 안전조치 의무 등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그동안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근거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서비스의 조기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

**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알림톡, 문자)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예 : 지자체의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

*** 금융사,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신용정보 등을 정보주체에게 일괄·통합 조회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예 : 소득·연령 대비 지출 분석, 예·적금 등 금융 컨설팅)

’12년부터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특정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홈페이지 가입 등을 위해 요청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하여 제공·활용해 왔다.

*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란,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복원 및 환원이 불가하게 암호화한 값

예시) 981214-1234567 → 일방향 암호화 → (연계정보) xa32djtoe#%edik..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등 혁신 서비스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사(주민번호 수집 법적 근거 보유기관)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변환 할 수 있어야 하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특례를 통해 임시허가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 이용자 식별을 위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계정보 정의를 신설*하고, 본인확인기관이 ①본인확인서비스, ②전자정부서비스, ③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연계정보의 생성 또는 제공·이용·대조·연계(이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모바일 전자고지, 금융마이데이터 등)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방통위는 서비스 혁신성, 연계정보 처리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취소가 가능

셋째, 방통위 승인을 통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한 본인확인기관 및 이를 제공받은 자(연계정보 이용기관)에 대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본인확인기관)와 안전조치(연계정보 이용기관) 의무를 부과하여 연계정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2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담당 부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책임자	과 장	박경주 (02-2110-1520)
		담당자	사무관	이상목 (02-2110-1521)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 또는 제공·이용·대조·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인증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이용자 식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계정보 생성·처리를 요청한 경우

나. 행정기관등이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처리를 요청한 경우

3.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 생성·처리를 요청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처리가 불가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2.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3.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받은 경우 동의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승인취소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①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생성·처리하는 연계정보의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②
(생략)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20. (생략)

<신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2. (생략)

④ ~ ⑦ (생략)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삭제

<신설>

<신설>

다른 실태점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0. (현행과 같음)

21. 본인확인업무 및 연계정보 생성·처리 관련 정책의 지원

22. -----제21호-----

23. (현행 제22호와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①-----

-----.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9. · 10.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4. (생 략)

<신 설>

<신 설>

3. ~ 9의2. (생 략)

<신 설>

10. ~ 12. (생 략)

② (생 략)

처리한 자

11. · 12.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

-----.

1. ~ 2의4. (현행과 같음)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 ·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